

신구조문 대비표

약관명: 외환거래기본약관

변경 전		변경 후		비 고
<p>제3조 (외화송금)</p> <p>① 은행은 신청인이 따로 요청하지 않는 한 거래은행(지급은행, 추심은행등 관련 은행을 말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.)은 은행이 선정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② 은행은 환거래은행에 지급지시 등을 함에 있어서 통상어, 부호, 암호등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③ 신청인은 송금거래를 마친 때 <u>지급지시서 사본 또는 송금수표 등으로</u> 송금 내용이 정확한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④ 신청인의 취소요청이 있는 경우 은행은 <u>송금수표의 원본을 반환받거나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송금취소확인서를 받은 후</u>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실제 반환받은 금액에서 은행 및 환거래은행의 모든 비용을 뺀 외화금액 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전신환매입률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지급합니다.</p>	<p>제3조 (외화송금)</p> <p>① 좌동</p> <p>② 좌동</p> <p>③ 신청인은 송금 거래를 마친 때 <u>지급지시서 사본 등으로</u> 송금 내용이 정확한가를 확인하여야합니다</p> <p>④ 신청인의 취소요청이 있는 경우 은행은 <u>환거래은행으로부터 송금취소확인서를 받은 후</u>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실제 반환받은 금액에서 은행 및 환거래은행의 모든 비용을 뺀 외화금액 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전신환매입률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지급합니다</p>	<p>- 송금수표발행을 중단함에 따라 송금수표 관련 문구를 삭제함</p>		